서울특별시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수수료
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제안자

ㅇ서울특별시장

2.제안이유

가.현행 교통사업특별회계가"교통관리계정""혼잡통행료관리계정""교통방송운영계정"의 3개 계정으로 구분·운영하고 있는 것을 "혼잡통행료관리계정"을 "교통관리계정"에 흡수하여 회계운영의 효율성 및 탄력성을 확보하고

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주요골자

가.혼잡통행료관리계정을 폐지하고 이를 교통관리계정에 흡수(안 제2조,제4조,제5조,제7조)

나."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던 것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근거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4.검토요지

가.혼잡통행료관리계정 폐지(안 제2조)

ㅇ혼잡통행료관리계정 설치배경

도심교통량 감축을 통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교통혼잡지역을 지정하고 일정시간대에 교통혼잡지역으로 진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이 징수수입을 대중교통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1996.10. 조례제정으로 남산 1·3호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해 왔으며, 이에 따른 수입을 대중교통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1997. 9에 본 조례를 개정하여 "혼잡통행료관리계정"을 신설하고 별도 관리하여 왔던 것임.

ㅇ혼잡통행료관리계정의 세입과 세출

-세입

혼잡통행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금

-세출

공영버스운영,시내버스공영화에 따른 사업,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의 투자, 시내버스의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필요한 사업

ㅇ이와같이 혼잡통행료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및 운영개선을 위해 지출할 수 있도록 별도 계정을 운영하여 왔으나 '98년 동 계정에서 혼잡통행료 수입은 전체수입의 33%인 138억5천만원, '99년예산 395억4천만원중 35%인 140억3천5백만원으로 혼잡통행료 수입에 따른 별도 계정의 설치 명분이 약하고

ㅇ계정을 세분화하는 경우 교통관리실이 전체 교통정책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신축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ㅇ그러나 혼잡통행료징수의 목적이 승용차 이용 억제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라는 2가지 측면에서 실시되었고, 이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통행료 징수수입은 반드시 대중교통수단에 투자되는 것을 확실히 하므로 ,혼잡통행료징수의 명분을 얻고자 하는 것이 당초의 목적이었음.

ㅇ한편, 예산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본 계정을 폐지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IMF 이후 경제가 정상화될 경우 승용차 이용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혼잡통행료 제도를 확대 실시할 경우와 앞으로 버스구조조정사업 등 버스관련 대책에 따른 예산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울시가 승용차 이용 억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이에 따른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별도의 계정이 필요한 면도 있다고 생각함.

나.근거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개정(안 제4조)

ㅇ본 조례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게 되어 관련조문을 정리하였음.

다.혼잡통행료관리계정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